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

2002. 1. 9.

인천광역시
문화개발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용어의 정의)	2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 4 조 (관리운영권)	6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7
제 6 조 (본 사업시설의 귀속)	7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7

제 3 장 사 업 비

제 8 조 (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8
제 9 조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	8

제 4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실시계획 및 계획의 변경승인)	9
제 11 조 (공사중 발생암의 처리)	10

제 12 조 (업무감독)	10
제 13 조 (공사기간)	10
제 14 조 (공정관리)	10
제 15 조 (이행보증)	10
제 16 조 (지체상금)	11
제 17 조 (공사의 도급)	11
제 18 조 (기성검사)	12
제 19 조 (부담 및 보상)	12
제 20 조 (민원 처리)	12
제 21 조 (안전관리)	13
제 22 조 (책임감리)	13
제 23 조 (보험가입)	13

제 5 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준공확인)	14
제 25 조 (유지관리)	14
제 26 조 (운영비용)	15
제 2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15

제 6 장 사업수익율 및 통행료

제 28 조 (사업수익율)	16
제 29 조 (통행료의 징수)	16
제 30조 (최초 통행료 산정)	16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17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18

제 33 조 (통행료 수입의 보장 및 환수)	18
----------------------------------	----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34 조 (위험배분의 원칙)	20
제 3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0
제 36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1
제 37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21

제 8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제 38 조 (재정지원)	23
제 39 조 (행정적 지원)	24
제 40 조 (기타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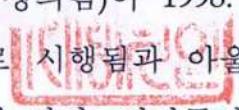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 41 조 (협약의 종료)	25
제 42 조 (협약의 중도해지)	26
제 43 조 (매수청구권)	27
제 44 조 (해지시 지급금)	27
제 45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29
제 46 조 (협약 중도 해지의 효과)	30
제 47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31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진)	31

제 10 장 기 타 사 항

제 49 조 (분쟁의 해결)	32
제 50 조 (불가항력 사유)	32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32
제 52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33
제 53 조 (자금의 차입 등과 인천광역시장의 협조)	33
제 54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33
제 55 조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34
제 56 조 (협약의 변경)	34
제 57 조 (권리 · 의무의 양도)	34
제 58 조 (협약의 우선)	34
제 59 조 (일부무효)	35
제 60 조 (적용 법규)	35
제 61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5
제 62 조 (문화재 및 위험물의 처리)	35
제 63 조 (통지)	35
제 64 조 (제목)	36
제 65 조 (기타)	36
제 66 조 (효력의 발생)	37
부록1. 총사업비	39
부록2. 추정교통량	40
부록3. 추정통행료 수입	41
부록4. 보험가입	42
부록5. 운영비용	43
부록6. 최초통행료 산출내역	44
부록7. 재무분석 SHEET	45

실 시 협 약

인천광역시와 문학개발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의 1994. 9. 6. 문학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에 의하여 1995. 12. 9. 자로 동 회사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학익동~연수구 청학동간 문학산 터널, 접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접속시설, 진입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시행협약(이하, “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문학개발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구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본 사업에 대하여 1996. 5. 16. 자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아래 정의됨) 경과조치사업으로 확정, 진행하였는 바, 양 당사자는 본 사업의 근거법률인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대체하는 민간투자법(아래 정의됨)이 1998. 12. 31. 자로 제정·공포되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99. 4. 1. 자로  시행됨과 아울러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1999. 7. 9. 자로 수립·공고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거 본 사업을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법과 그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변경 실시협약을 2002. 1. 9.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 및 문학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기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감리자 : 본 협약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2. 건설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계획변경 : 본 사업시설의 완공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승인받은 최종실시설계성과와 달라지는 항목 중 골재원 및 사토장위치 변경, 노선연장 및 폭원변경(교량 상부구조 형식포함), 옹벽 및 방음벽 제원변경, 출입시설의 위치 및 형식 변경, 민원으로 인한 인천시 요구 사항을 말한다.
6.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최초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준공확인을 필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공사착수일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체결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실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는 날을 의미한다.
8.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으로서 본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교통량 :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의미한다.
10.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말한다.
11.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12. 대주단 :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13. 대출약정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주단등과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14.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6.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대통령령 제1709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0-3호(2000. 3. 13.)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8.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9.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 대한민국대통령령 제1527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0.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 부록3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사업년도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21. 보조금 : 본 협약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2.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특정된 문학산 터널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하며, 여기서 건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말하며, 운영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행료 징수,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등의 영위를 각 의미한다.

23. 본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4.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한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5. 본 사업시설 : 민간자본 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고에서 특정된 본 사업의 대상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학익동~연수구 청학동간 문학산 터널, 접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접속시설, 진입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6.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본 협약당사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28. 불가항력 사유 :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협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제37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29. 사업년도 : 본 사업기간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운영종료년도의 경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실제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30. 사업수익률 :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통행료산정을 위한 함수관계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31.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문학개발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32. 사업시행자의 지정 :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구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33.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법률 제6104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4. 소비자 물가변동율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상의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의미한다. 소비자 물가변동율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35. 시공자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

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7. 시설사업기본계획 : 인천광역시가 고시 제1994 - 248호(1994.9.6.)에 의한 문화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8.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구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1996. 5. 16.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9.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 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실제로 본 시설을 개통하고 통행료의 징수등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40. 유관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및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41. 이행보증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준공에 관한 보증을 말한다.
42. 인천광역시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말하며, 그 명칭변경 및 행정 구역 개편의 경우를 포함한다.
43. 잉여수익금 : 실제 통행료수입과 환수기준 통행료수입과의 차액에서 동 차액으로부터 기인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44.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자 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5. 전문기관 : 회계법인 또는 평가법인 등으로서 수시로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6.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의 이전 등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
47. 차량의 구분 : 본 협약에서 의미하는 차량의 구분은 소형과 대형으로 하고, 그 세

부사항은 부록2에 의한다.

48. 총 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9. 총 민간사업비 : 총 사업비에서 본 협약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조기상환수수료 포함)를 의미한다.
51. 최초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 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한다.
52. 추정교통량 : 본 협약 제27조 제1항에 제시된 교통량으로써 그 내용은 부록2와 같다.
53. 추정통행료수입 : 본 사업시설의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부록3과 같다.
54. 출자자 :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출자한 군인공제회를 의미한다.
55.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를 말한다.
56.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뜻한다.
57. 환수기준통행료수입 : 부록3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년도의 추정통행료수입의 110%를 말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문학개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 4 조 (관리운영권)

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간접시

설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준공 후 시운전 및 본 사업시설의 홍보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기간은 본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의 설정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 ①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 실시설계와 건설
 2. 제1호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시설 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본 사업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 사용 수익
 4. 관리운영권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
 5.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 ②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 ③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 ④ 본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과 권리

를 철회,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며, 조례, 행정계획, 행정지침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3 장 사 업 비

제 8 조 (총 민간사업비의 산정)

- ① 본 협약 체결시 총 민간사업비는 금642.87억원(2001년 9월 30일 불변가격)으로 그 내용은 부록1과 같다.
- ② 총 민간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는 금156.87억원(2001. 9. 30. 불변가격, 1995. 12. 9. 시행협약체결 당시 불변가격 금136억원에 해당함)으로 하며 금156.8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천광역시가 부담한다. 단, 총 민간사업비 중 보상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

- ① 총 민간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 사업비의 변경 기준일은 2001. 9. 30.로 한다.
 2.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
 3.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4.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서)의 제·개정으로 인

하여 총 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건설기술심의 조치계획 결과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요구하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③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기타 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총 민간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총 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 ④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시 실시설계의 설계내역서(본 협약체결시 조정된 내역 반영)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작성 기준일은 2001. 9. 30.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총 민간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한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 및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총 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 ⑦ 총 민간사업비의 증가가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36조에 따라,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37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총 민간사업비의 증가는 총 민간사업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실시계획 및 계획의 변경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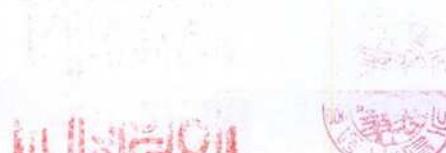
제 11 조 (공사중 발생암의 처리)

- ① 터널 및 도로 굴착시 발생하는 양질의 암석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현장에서 원석 또는 골재로 판매하며, 골재판매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인천광역시장이 승인한다.
- ② 공사시공 중 발생하는 사토의 처리에 필요한 사토장은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확보한다.

제 12 조 (업무감독)

인천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한다.

제 13 조 (공사기간)

- 
- ① 본 공사기간은 절대공기 36.7개월(준공예정일 2002. 3. 30.)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제 14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의 필요에 의한 요구시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민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보증금(현금, 유가증권,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③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민간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증가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변경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에 정한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완공일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 민간사업비 중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기집행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누적지체상금의 총액은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연장된 공사기간 이후부터 산정한다.
- ③ 누적지체상금의 총액이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키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누적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을 갖춘 시공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시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사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가 제2항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게 지불될 기성금액 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매 분기 또는 공정율별로 1회 이상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장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 19 조 (부담 및 보상)

-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실 보상에 따른 보상비용은 본 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담한다. 단, 보상에 따른 행정 절차는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한다.
- ②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 등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토지보상, 손실보상, 분묘이전 및 이주대책 등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며, 위탁공사(체신주, 한전주, 광케이블 기타 지장물 이전)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천광역시장은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상지연 등 보상업무와 관련한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본 협약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의 보상업무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7장에서 정한 위험 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0 조 (민원 처리)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제19조의 보상업무에 관련된 민원은 인천광역시가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과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필요시 감리자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22 조 (책임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감리자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 실적에 따라 책임감리 용역비를 매 2개월마다 감리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 사이에 체결된 감리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감리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의 정기보고, 기성보고,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 등을 보고한다.

제 23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체결 당시 기가입된 또는 가입예정인 보험의 내용은 부록4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보험금을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동사실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준공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시공사가 작성하여 감리자가 확인한 확정 설계도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3개월 전에 감리자로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공 후 즉시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를 첨부한 본 사업에 대한 공사 준공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고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준공확인 신청을 접수한 즉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통행료 기타 필요사항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까지 다음 년도의 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유지보수 결과에 대하여 다음연도 1/4분기 내에 인천광역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운영비용)

사업시행자의 운영비는 부록5에서 제시된 352.69억원(법인세 제외)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부록5의 운영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통행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본 협약 체결시 적용하는 추정교통량은 부록2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매년도의 1/4분기 중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교통량 현황 및 사업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수익율 및 통행료

제 28 조 (사업수익율)

본 사업의 사업수익율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기간에 합의한 세후 실질사업수익률(IRR)로써 9.62%로 한다.

제 29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② 통행료 징수방식이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통행료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부담하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차액은 정산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내역, 비용부담 비율 등을 그 변경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0조 (최초 통행료 산정)

- ① 본 협약체결시 최초통행료는 본 협약 제28조에서 제시한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본 협약 체결단계에서 본 협약 당사자와 합의한 금액 (소형 588원, 대형 823원; 2001년 9월 30일 불변가격기준, V.A.T제외)으로 한다. 다만,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적용통행료는 최초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 적용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 신고한다.

1. 통행방법 및 통행료율
2. 통행료의 산출기초자료
3. 통행료의 징수방법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통행료(최초통행료 포함)는,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 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부록3의 추정통행료 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③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통행료와 그 요금수준이 상이한 통행료를 최초통행료로 적용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통행료 수입을 보전 또는 환수하기로 한다.
1. 인천광역시장이 요청한 통행료의 적용 후 매년 말 경과시점에서 산정된 사업시행자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초통행료 적용시 예상되는 당해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에 미달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그 미달분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2. 위 실제통행료 수입이 당해연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동 초과분을 환수하기로 한다. 이 경우 환수분의 처리는 본 사업의 재정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제 31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무상사용기간 중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년도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율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에 본 조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근 통행료조정이 있었던 사업년도 이후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통행료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 통행료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신고후 3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는 신고된 통행료로 확정되며, 새로운 통행료는 15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천

광역시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통행료와 그 요금수준이 상이한 통행료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통행료수입의 증감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32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2. 직전년도 실제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된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협의기간동안 통행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의 협의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본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본 협약 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의한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통행료의 산정결과를 협약당사자 쌍방에 문서로 통보토록 하며, 본 협약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33 조 (통행료 수입의 보장 및 환수)

- ① 추정통행료수입은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협약체결시의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3과 같다.
- ② 인천광역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기간동안 매사업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이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한다. 단,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본 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 및 본 도로와 유사한 위치 및 운영조건을 가진 여타 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되,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도로가 가지는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본 도로의 통행료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 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 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④ 인천광역시의 요구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수입과 감면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수입의 차이)을 지급한다.
- ⑤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통행료수입은 다음 순서에 의거 처리한다.
1. 본 협약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재정지원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에 충당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3. 인천광역시 환수
- ⑥ 통행료수입보전을 위한 보조금에 부가되는 법인세부담분이 발생하더라도 동 부담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 ⑦ 통행료수입보장 및 환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산 완료된 통행료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통행료수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 포함)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34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37조에 정한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 별도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2항에 따른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의 보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3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 민간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몫수
 4. 인천광역시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인천광역시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인천광역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37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인천광역시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2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 ③ 공사기간중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 민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 민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 민간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80%의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 민간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직·간접비용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도로의 통행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책임있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비용은 제외된다.

- ④ 운영기간중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수입 보장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제33조 통행료수입보장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 계약(들)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51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8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제 38 조 (재정지원)

- ①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 지원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인천광역시의 요구등 인천광역시의 행위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하고 동 방침에 따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 ③ 제33조에 의한 재정지원에 있어 재정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원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년도부터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 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날로부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보조금 포함)을 함에 있어, 당해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법인세 기타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재정지원금액이 당해 재정지원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함께 지원하거나 또는 장기대부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9 조 (행정적 지원)

- 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적정 통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계도로의 건설 및 버스노선을 개선하여 주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의 보관 등 금융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0 조 (기타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 ①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인·허가등 유관기관에 의한 제반절차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내의 공유재산을 본 사업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한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정부, 인천광역시 기타 유관기관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동 개선사항 및 변경내용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 41 조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인천광역시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2년전 및 6개월전에(총2회)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하여야 한다. 시설의 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③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2 조 (협약의 중도해지)

- ① 인천광역시장에 의한 중도해지 - 제35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에 서면으로써 본 협약의 중도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인천광역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 한 경우.
2. 건설기간, 무상사용 기간중에 본 사업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도로, 터널 또는 교량등이 개설되어,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교통량의 현격한 변동이 있어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 기간만의 조정으로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6조(인천광역시장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제37조(협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

이 시행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 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본 조에 따라 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본 협약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 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해지사유의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 43 조 (매수청구권)

- ① 본 협약 제42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액은 가액산정 당시의 영업권을 포함한 잔여운영기간 기대수익(단,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을 사업수익율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으로 한다. 잔여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본 협약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제 44 조 (해지시 지급금)

- ①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 이하 동일)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6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⑤ 본 조에 정한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시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률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⑥ 중도해지사유가 매수청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지급금과 제43조에 정한 매수가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제 45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 ①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해지시 지급할 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인천광역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인천광역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적정가치의 산정에 있어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기투입된 부분은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② 본 협약의 중도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에 대하여 본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금액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해당금액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금액이 정하여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적정가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본 협약당사자간에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협의하여 인정한다.
- ④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일 현재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없이, 세금 또는 세금을 이유로 한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 ⑥ 인천광역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가 총선순위채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제 46 조 (협약 중도 해지의 효과)

- 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인천광역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인천광역시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인천광역시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없이, 사업시행자가 총 민간사업비를 투입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계획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한다.

제 47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 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진)

-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사업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인천광역시는 대체사업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유지, 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기술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천한 대체사업자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대체사업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대체일 이후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및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지정일에 존재했던 협약중도해지사유 또는 자금차

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에 대하여 합의한다.

- ④ 인천광역시와 대체사업자는 본 조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제 10 장 기 타 사 항

제 49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협약 당사자간의 상호협의가 불가시 분쟁의 합의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50 조 (불가항력 사유)

본 협약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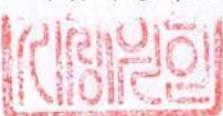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체협의)

- ① 본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분쟁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49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제2항에 의한 불가항력 청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 모두 청구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청구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에 본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52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본 사업기간동안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을 관련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본 협약상의 의무 준수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제 53 조 (자금의 차입 등과 인천광역시장의 협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총 민간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자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동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 54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광고사업등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금은 다음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인천광역시는 행정지원 조치 등 적극 협조한다. 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보장통행료 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 55 조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중 시설사업 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56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본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 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규정된 본 협약 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7 조 (권리 · 의무의 양도)

본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 58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부록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구 협약을 포함하여 그 전에 본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구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본 협약체결시까지 이뤄진 협약당사자간의 약정, 이행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59 조 (일부무효)

본 협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로 되더라도 본 협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60 조 (적용 법규)

-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 61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 62 조 (문화재 및 위험물의 처리)

본 협약 당사자들이 본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 또는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협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폭발물 유독 화학 물질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7장에 정한 위험 배분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63 조 (통지)

본 협약상의 통지 또는 최고는 다음의 연락처(단,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서면통지 하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발송하여야 한다. 모든 통지는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시행자에게 : 문학개발주식회사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75번지

참조 : 관리부장

전화 : 032) 425 - 4314 - 5

팩스 : 032) 425 - 4316

인천광역시에게 : 인천광역시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참조 : 도로과장

전화 : 032) 440 - 3794

팩스 : 032) 440 - 3779

제 64 조 (제목)

본 협약상의 모든 조항들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협약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5 조 (기타)

- ① 본 협약내용 중 민간자본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민간자본투자사업 투자희망자 공모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시행자는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본 사업시설공사의 일부에 인천광역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③ 건설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시설을 계속하여 사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66 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일 현재 구 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2. 1. 9.



인천광역시
시장 최기



문화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익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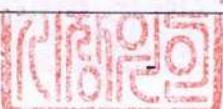


부록 1.

총 사업비

(2001. 9. 30.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조 사 비	213	
2. 설 계 비	978	
3. 공 사 비	40,329	
4. 보 상 비	15,687	
5. 부 대 비	5,008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2,072	
계	64,287	

* 총 사업비는 '01. 9. 30. 불변가격 기준(가격기준일 : '01. 9.30.)

*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2.

추 정 교 통 량

구분	1일 교통량(대/일)			연간교통량(대)		
	소형	대형	계	소형	대형	계
2002년	41,045	3,420	44,465	14,981,425	1,248,300	16,229,725
2003년	42,101	3,508	45,609	15,366,865	1,280,420	16,647,285
2004년	43,281	3,606	46,887	15,797,565	1,316,190	17,113,755
2005년	44,470	3,705	48,175	16,231,550	1,352,325	17,583,875
2006년	45,557	3,796	49,353	16,628,305	1,385,540	18,013,845
2007년	46,714	3,892	50,606	17,050,610	1,420,580	18,471,190
2008년	48,055	4,004	52,059	17,540,075	1,461,460	19,001,535
2009년	49,338	4,111	53,449	18,008,370	1,500,515	19,508,885
2010년	50,776	4,230	55,006	18,533,240	1,543,950	20,077,190
2011년	52,153	4,345	56,498	19,035,845	1,585,925	20,621,770
2012년	53,508	4,458	57,966	19,530,420	1,627,170	21,157,590
2013년	54,942	4,578	59,520	20,053,830	1,670,970	21,724,800
2014년	56,430	4,702	61,132	20,596,950	1,716,230	22,313,180
2015년	57,915	4,825	62,740	21,138,975	1,761,125	22,900,100
2016년	59,334	4,944	64,278	21,656,910	1,804,560	23,461,470
2017년	60,085	5,006	65,091	21,931,025	1,827,190	23,758,215
2018년	60,730	5,060	65,790	22,166,450	1,846,900	24,013,350
2019년	61,357	5,112	66,469	22,395,305	1,865,880	24,261,185
2020년	61,916	5,159	67,075	22,599,340	1,883,035	24,482,375
2021년	62,225	5,184	67,409	22,712,125	1,892,160	24,604,285
2022년	62,824	5,234	68,058	22,930,760	1,910,410	24,841,170

* 연간교통량 = 1일 교통량 × 365일이며, 상기 교통량은 왕복 교통량임

* 차량구분은 소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차 종	내 용
소 형 (1)	1종	소 형 차 ·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2종	중 형 차 · 17인승 이상 ~ 32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상 ~ 5.5톤 이하 화물차
대 형 (1.4)	3종	대 형 차 · 33인승 이상 승합차 · 5.5톤 초과 ~ 10톤 미만 화물차
	4종	대형화물 · 10톤 이상 화물차
	5종	특수화물 · 20톤 이상 화물차

부록 3.

추정 통행료 수입

(2001. 9. 30.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불변가격	구분	불변가격
2002년	7,379	2013년	13,170
2003년	10,092	2014년	13,527
2004년	10,375	2015년	13,882
2005년	10,660	2016년	14,223
2006년	10,920	2017년	14,403
2007년	11,198	2018년	14,557
2008년	11,519	2019년	14,708
2009년	11,827	2020년	14,842
2010년	12,171	2021년	14,916
2011년	12,501	2022년	3,765
2012년	12,826	계	253,459

* 추정통행료 수입은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 통행료는 소형 588원, 대형 823원('01. 9.30. 불변가격 기준) 적용

* 소형차 대비 대형차 통행료는 1.4배임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5% 반영

부록 4.

보 험 가 입

1. 건설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	
보험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목적물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 (A.L.O.P)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잘못, 전기적 사고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등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 (A.L.O.P)	전 위험 담보
담보지역	문학산터널 건설현장 및 주변 (접속도로, I/C, 지하차도 포함)	
보험기간	공사착수 시점 ~ 공사완공시점	
보험금액	1) 공사목적물 : 예정공사금액 2)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 상실분	

2. 운영기간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 토목공사물 보험 (C.E.C.R) 2) 기업 휴지 보험 (L.O.P) 3) 영업배상 책임 보험 (C.G.L)	
보험목적물	1) 완성 토목공사물 보험 ① 완성 토목공사물 (터널) ②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L.O.P) 2) 영업배상 책임 보험 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C.G.L)	
보상내용	1) 완성 토목공사물 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잘못, 전기적 사고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등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L.O.P) 2) 영업배상 책임 보험 ① 보험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초과 손해액	전위험담보
담보지역	문학산터널 및 주변 (접속도로 포함)	
보험기간	운영기간	
보험금액	1) 완성 토목공사물 : 터널 공사금액 2) L.O.P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3) C.G.L : 10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부보비율	100%	

부록 5.

운 영 비 용

(2001. 09. 30.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운 영 비 용			구 분	운 영 비 용		
	운영비	법인세등	계		운영비	법인세등	계
2002년	1,434		1,434	2013년	2,204	2,254	4,458
2003년	1,638		1,638	2014년	1,647	2,310	3,957
2004년	1,655		1,655	2015년	1,628	2,688	4,316
2005년	1,636		1,636	2016년	1,647	2,898	4,545
2006년	1,652	138	1,790	2017년	1,855	3,086	4,941
2007년	1,861	763	2,624	2018년	2,144	3,228	5,372
2008년	1,650	1,034	2,684	2019년	1,626	3,198	4,824
2009년	1,632	1,296	2,938	2020년	1,644	3,424	5,068
2010년	1,649	1,553	3,202	2021년	1,625	3,478	5,103
2011년	1,630	1,798	3,428	2022년	936	3,524	4,460
2012년	1,874	2,038	3,912	계	35,269	38,708	73,977

* '01. 9. 30. 불변가격 기준(가격기준일 '01. 9.30.)

* 법인세 등은 협약체결일 현재 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함

*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6.

최초통행료 산출내역

(2001. 9. 30.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현금유출				현금유입	
	①총민간사업비	②운영비용	계 ①+②	현재가치	③통행료수입	현재가치
1996년	10,825		10,825	16,745		
1997년	1,941		1,941	2,739		
1998년	8,105		8,105	10,434		
1999년	204		204	240		
2000년	18,570		18,570	19,894		
2001년	23,853		23,853	23,311		
2002년	789	1,434	2,222	1,981	7,379	6,579
2003년		1,643	1,643	1,332	10,092	8,208
2004년		1,660	1,660	1,228	10,375	7,697
2005년		1,640	1,640	1,107	10,660	7,215
2006년		2,313	2,313	1,105	10,920	6,743
2007년		2,800	2,800	1,478	11,198	6,307
2008년		2,864	2,864	1,379	11,519	5,919
2009년		3,112	3,112	1,372	11,827	5,544
2010년		3,391	3,391	1,369	12,171	5,205
2011년		3,622	3,622	1,337	12,501	4,877
2012년		4,110	4,110	1,392	12,826	4,564
2013년		4,660	4,660	1,447	13,170	4,275
2014년		4,164	4,164	1,172	13,527	4,006
2015년		4,528	4,528	1,166	13,882	3,751
2016년		4,762	4,762	1,120	14,223	3,505
2017년		5,163	5,163	1,111	14,403	3,238
2018년		5,596	5,596	1,102	14,557	2,986
2019년		5,050	5,050	903	14,708	2,752
2020년		5,296	5,296	865	14,842	2,533
2021년		5,333	5,333	795	14,916	2,322
2022년		5,688	5,688	633	3,765	535
계	64,287	73,977	138,264	98,761	253,459	98,761

* '01. 9. 30.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01. 9.30)

* 실질할인율은 9.62% 적용

부록 7. 재무분석 SHEET

- 재무분석 SHEET 디스켓 1 EA 첨부

